#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08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이헌승·김도읍·김학용

박덕흠 • 박성민 • 서병수

양금희 • 이주환 • 장동혁

전봉민 • 주호영 • 최춘식

하영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입지·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 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9조, 제9조의5).

####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6호"를 "제4항"으로 한다.

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갈등조정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8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한다.

⑤ 권역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위원회에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 체를 둘 수 있다.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호 중 "위원 또는"을 "위원, 갈등조정전문위원회 위원 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 |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 6. -----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 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 항에 관한 심의 · 조정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6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 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 · 의결된 사항에 대 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 ④ (생략) <신 설>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5</u>	
	<u>제4항</u>

-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8조제2 항제6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 회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 ⑥ 갈등조정전문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 ④ (현행과 같음)
- ⑤ 권역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위원회에

⑤ 그 밖에 권역별 <u>위원회</u>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광역교통위원회 <u>위원 또는</u>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생략)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되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u>⑥</u> 위원회 및 실
<u> 무협의체</u>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u>위원, 갈등조</u>
정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2. (현행과 같음)